



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뚜옌꽝성 뚜옌꽝시와 대한민국 전라북도 임실군

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한 협약서



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뚜옌꽝성 뚜옌꽝시와 대한민국 전라북도 임실군은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고, 양 기관의 농업분야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.


1. 양 기관은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신뢰와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한다.
2.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농업 분야 인적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.
 - 가. 임실군은 베트남 외국인 계절근로자(이하 “계절근로자” 라 한다.)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 인권보호를 비롯한 안전한 거주를 위해 대한민국법에 따라 최대한 지원한다.
 - 나. 뚜옌꽝시는 베트남법과 임실군 계절근로자 조건에 따라 계절근로자 선발·교육·송출·출입국 관련 업무를 최대한 지원한다.
3. 양 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해당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.
4.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절근로자 불법체류와 이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한다.
 - 가. 임실군과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절근로자가 베트남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.
 - 나. 뚜옌꽝시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즉시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.

5. 양 기관은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.

6. 본 협약서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자들의 서명과 함께 발생하며, 유효 기간은 효력 발생한 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, 협약 종료와 관련한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매 3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. 만약 협약서의 수정이나 해지를 원할 시에는 6개월 전에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.

본 협약서는 한국어, 베트남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양 기관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 모든 내용은 동일하며, 만약 해석의 차이가 발생 시, 영문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.

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뚜옌꽝성
뚜옌꽝시 부위원장
응우옌 쑤언 뇨



서명일 : 2022. 10. 1.
장 소 : 임 실 군

대한민국 전라북도
임 실 군 수
심 민



서명일 : 2022. 10. 1.
장 소 : 임 실 군